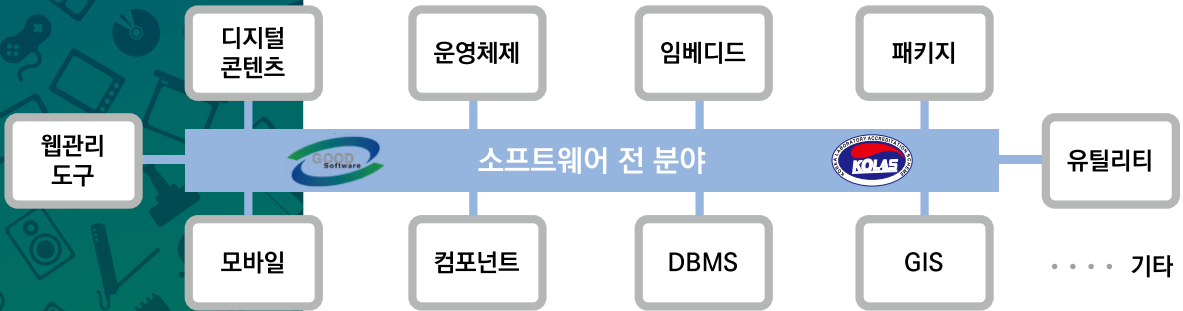




GS (Good Software) 시험·인증



'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(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)'에 의거 임베디드, 패키지, 주문형, 모바일 등 SW 전 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수행을 통해 제품 품질 개선 지원



시험 항목 및 방법

GS인증 1등급	GS인증 2등급
ISO/IEC 25023, 25051 및 2504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능적합성, 성능효율성, 호환성, 사용성, 신뢰성, 보안성, 유지보수성, 이식성,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평가	제품 보완 기회 미제공 재무 상태, 납품실적, 수상실적 등 기업 신뢰도 평가
제품 보완 기회 제공	

제도적 혜택

-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구매기간과의 수의계약 지원
-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
-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제도
-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·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
-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
-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
-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

시험·인증 절차



* GS인증 2등급은 제품 보완 기회 미제공으로 회귀시험 미수행